

부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나518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나5180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3211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이재규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헌

담당변호사 김경덕

변론 종결 2024. 10. 2.

판결 선고 2024. 10. 3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3211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9. 체결한 증여계약을 12,972,2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72,2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3항에서 배척하는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보태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2. 3.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제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주장의 요지

E 대표이사인 D이 위 회사의 코로나 19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E이지 D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용도를 '기업자금대출'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서류에 당사자가 E이 아닌 D으로 명기되어 있고, D이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D이 이 사건 대출금을 E의 기업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D이 아닌 E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 주장의 요지

D은 E에 대하여 12억 원 내지 13억 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D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이 E에 위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D이 E으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위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D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혼인 중 D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명의자인 D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D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서류는 모두 D 명의로 작성되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거나 이에 협력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고종영

판사금덕희

판사이상균

별지